

고시

제 12권 조결에의 68규 함호정 장전결사항

기안자	농정과 이종환	전화번호	22-4708	공보	필요	불필요
추경계장	농정과장	산업국장	제부시장	시	장	
회	회	전				
협조자	문서계장	보존				
서명	법제계장	년한				
기안월일	66.4.25	시행월일	1966.5.2	통제판	정서	기장
분류기호	사안농 1162.12-1000	문서번호	1966.5.2	검열		
경수참	유신조	각안참	고시제 970호			
제목	66년도 총추검사 실시					
제안 내부결재						
<p>추산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66년도 정기 총추검사를 다음 각안과 같이 실시코자 합니다.</p> <p>제2안 고시 (안)</p> <p>서울특별시 고시제 970호 (안)</p> <p>추산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6년도 정기 총추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.</p> <p>1966년 5월 2일</p> <p>서울특별시 시장 김 현 우</p>						

별기 회 제 5와 100

141 (2)

1. 실시방위

서울특별시 연역

2. 실시기간

1966. 6. 3 ~ 1966. 6. 22

3. 검사대상

유우, 유우, 한우, 온산양, 파편양

4. 검사장소

종축검사 신청서에 의한
현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장소

5. 검사방법

종축검사를 받고자 하는

가축은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종축검사원이 순
회 하며 검사한다

제 3 안

수신 수신취할 조

할 조 산업과장

제목 등 전

66년도 정기 종축검사를 별첨과 같이
고지 하였으나 관내 양축가에게 철저히 주지
시키고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실 것

유철 고시문 1 부 끝

수신 (제 2 안 고시문 이기 ~~등~~)
취할 1~9

수신 공보실장

발신 산업과장

제목 등 전

추산법 제 3 조 및 등법 시행규칙
제 2 조의 ~~규정~~에 의하여 ~~검~~ 별첨과 같이 66년도

정기 종축검사를 실시 할것을 고하였기 시호에 계
재 하여 일반에게 널리 주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
유철 고시문 1부 끝 (제고안 고시문 이기 ~~시호~~)

검역
1946. 5. 2.
서울특별시
농림부

참고 關係法抜擢

畜産法 第3條 (種畜檢査) 서울特別市長
釜山市長 또는 道知事 (以下 地長官이
라한다)는 農林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
每年 定期的으로 種畜檢査를 實施한다

畜産法 施行規則 第2條 (種畜檢査期日告示)

① 法第3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種畜
檢査는 每年 3月 또는 4月에 實施한다

②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는
定期檢査外 臨時檢査의 期日 場所
期日 其他 必要한 事項을 定하여 檢査期日 30日
前에 이를 告示 하여야 한다